

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3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연임 제한 변경(안 제22조제7항)

- (당초) 한차례만 연임 가능 → (변경) 두차례 연임 가능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“사용료등””을 ““사용료 등”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7항 단서 중 “한 차례만”을 “두 차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기의 적용례)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(연임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사용료 등)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, 이용자에게 사용료, 수강료 등(이하 “ <u>사용료등</u> ”이라 한다)을 징수할 수 있다. ② ~ ⑦ (생략)	제10조(사용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“ <u>사용료 등</u> ” -----.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2조(구성 등) ① ~ ⑥ (생략) ⑦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은 <u>한 차례만</u> 연임할 수 있다.	제22조(구성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. ----- <u>두 차례</u> ----- 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, 시·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·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10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)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·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·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. 다만,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. 다만,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. 다만,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소 관 부 서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박 노 돈
	팀 장	장 정 수
	담 당 자	김 수 현 (480-6764)